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고시 제정 계획

I 목 적

- 2025년 배출부과금(수질·대기) 및 총량초과과징금(대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격변동지수와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산정하여 고시

< 적용례 -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산출식 >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

II 근 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III 추진경과

- 매년 배출부과금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를 위해 가격변동지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산출

※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고시 제정('24.1.)

IV

산출방법

- (가격변동지수)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술평균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

V

산출결과

-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 1.0207

$$(\text{소비자 물가상승률} + \text{생산자 물가상승률}) / 2 = (2.57\% + 1.56\%) / 2 = 2.07\%$$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산출기준 기간은 고시 시행일을 고려하여 전년도 11월~금년도 10월 단위로 적용함.
[물가상승률 = (당해년도 물가지수-전년도 물가지수) / 전년도 물가지수 × 100]

-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수질 배출부과금(수질수생태과)

- 2025년도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 : 6.7825

$$2024\text{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6.6451 \times 1.0207 = 6.7825$$

② 대기 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가. 2025년도 초과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 : 6.7825

$$2024\text{년도 초과부과금 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6.6451 \times 1.0207 = 6.7825$$

나. 2025년도 기본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질소산화물) : 1.1645

$$2024\text{년도 기본부과금 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1.1409 \times 1.0207 = 1.1645$$

다. 2025년도 기본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먼지, 황산화물) : 2.0290

$$2024\text{년도 기본부과금 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1.9879 \times 1.0207 = 2.0290$$

③ 대기 총량초과과징금(대기관리과)

- 2025년도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 : 1.7213

$$2024\text{년도 과징금 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1.6864 \times 1.0207 = 1.7213$$

참고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22.12. 제정 고시)>

- ① 2023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319로 한다.
- ② 2024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으로 한다.
- ③ 2024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409으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9879로 한다.
- ④ 2024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6451으로 한다.
- ⑤ 2024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6864으로 한다.

VI

향후계획

○ 관보게재 및 관계기관 통보('24.12.)

※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미실시

붙임 1.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고시(안) 1부

2. 가격변동지수 및 부과금산정지수 산출내역 1부. 끝.

환경부고시 제2024-28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 ① 2024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207로 한다.
- ② 2025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7825로 한다.
- ③ 2025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645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2.0290으로 한다.
- ④ 2025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7825로 한다.
- ⑤ 2025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7213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배출부과금(수질.대기) 및 총량초과과징금(대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격변동지수와 연도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 산정
 -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

1. 큰 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초과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③ 기본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2. 산출방법

- (가격변동지수)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의 산술평균
 - ※ '83~'87년까지 가격변동지수는 고정율(120/100)을 적용, '88년부터는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
- (부과금산정지수) 전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
 - ※ 대기기본부과금의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최초 부과년도('97년)를 1로 적용
대기총량과징금 산정지수는 최초 부과년도('08년)를 1.2로 적용

3. 산출결과

□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의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산술평균

-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 1.0207

$$\frac{1) \text{ 소비자물가상승률} + \text{생산자물가상승률}}{2} = \frac{2) 2.57\% + 1.56\%}{2} = 2.07\%$$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산출기준 기간은 고시 시행일을 고려하여 전년도 11월~금년도 10월 단위로 적용함

[물가상승률= {(당해연도 물가지수-전년도 물가지수) / 전년도 물가지수} × 100]

□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

-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에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

① 수질 배출부과금(수질수생태과)

- 2025년도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 : 6.7825

$$2024\text{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6.6451 \times 1.0207 = 6.7825$$

② 대기 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가. 2025년도 초과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 : 6.7825

$$2024\text{년도 초과부과금 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6.6451 \times 1.0207 = 6.7825$$

나. 2025년도 기본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질소산화물) : 1.1645

$$2024\text{년도 기본부과금 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1.1409 \times 1.0207 = 1.1645$$

다. 2025년도 기본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먼지, 황산화물) : 2.0290

$$2024\text{년도 기본부과금 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1.9879 \times 1.0207 = 2.0290$$

③ 대기 총량초과과징금(대기관리과)

- 2025년도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 : 1.7213

$$2024\text{년도 과징금 산정지수} \times 2024\text{년도 가격변동지수} = 1.6864 \times 1.0207 = 1.7213$$

참고1

물가상승률 산출근거

1. 지난 1년간의 소비자·생산자물가 상승률

○ 소비자 물가상승률 : 2.57%

$$= \frac{2024 \text{ 소비자 물가지수}(113.86) - 2023 \text{ 소비자 물가지수}(111.00)}{2023 \text{ 소비자 물가지수}(111.00)} \times 100$$

○ 생산자 물가상승률 : 1.56%

$$= \frac{2024 \text{ 생산자 물가지수}(118.77) - 2023 \text{ 생산자 물가지수}(116.95)}{2023 \text{ 생산자 물가지수}(116.95)} \times 100$$

2.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통계청, 한국은행)

구 분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지수	전년동월비(%)	지수	전년동월비(%)
2023	2022. 11	109.07	5.0	116.75	6.2
	2022. 12	109.26	5.0	116.27	5.8
	2023. 01	110.07	5.0	116.69	5.1
	2023. 02	110.33	4.7	116.91	4.8
	2023. 03	110.52	4.2	117.05	3.3
	2023. 04	110.77	3.7	116.96	1.6
	2023. 05	111.13	3.4	116.53	0.5
	2023. 06	111.16	2.7	116.27	-0.3
	2023. 07	111.29	2.4	116.53	-0.3
	2023. 08	112.28	3.4	117.5	0.9
	2023. 09	112.85	3.7	118.03	1.3
	2023. 10	113.27	3.8	117.86	0.6
평 균		111.00	3.92	116.95	2.46
2024	2023. 11	112.68	3.3	117.41	0.6
	2023. 12	112.73	3.2	117.56	1.1
	2024. 01	113.17	2.8	118.19	1.3
	2024. 02	113.78	3.1	118.55	1.4
	2024. 03	113.95	3.1	118.82	1.5
	2024. 04	114.01	2.9	119.16	1.9
	2024. 05	114.1	2.7	119.25	2.3
	2024. 06	113.84	2.4	119.23	2.5
	2024. 07	114.13	2.6	119.56	2.6
	2024. 08	114.54	2.0	119.38	1.6
	2024. 09	114.65	1.6	119.16	1.0
	2024. 10	114.69	1.3	119.02	1.0
평 균		113.86	2.58	118.77	1.57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23.12) 및 생산자물가지수 기준년도 변경(2015→2020) 반영

참고2

가격변동지수 및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추이

구분	전년도 가격변동지수	부과금 산정지수			
		수질 배출부과금 (기본,초과)	대기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	총량과징금
2025년	1.0207	6.7825	6.7825	1.1645(질소) 20290(먼지, 황)	1.7213
2024년	1.0319	6.6451	6.6451	1.1409(질소) 1.9879(먼지, 황)	1.6864
2023년	1.0692	6.4397	6.4397	1.1056(질소) 1.9264(먼지, 황)	1.6343
2022년	1.0334	6.0229	6.0229	1.0340(질소) 1.8017(먼지, 황)	1.5285
2021년	1.0006	5.8282	5.8282	1.0006(질소) 1.7435(먼지, 황)	1.4791
2020년	1.0038	5.8247	5.8247	1.7425	1.4782
2019년	1.0180	5.8027	5.8027	1.7360	1.4727
2018년	1.0260	5.7001	5.7001	1.7054	1.4467
2017년	0.9910	5.5561	5.5561	1.6622	1.4100
2016년	0.9850	5.6066	5.6066	1.6773	1.4228
2015년	1.0045	5.6920	5.6920	1.7028	1.4445
2014년	0.9985	5.6665	5.6665	1.6952	1.4380
2013년	1.0235	5.6751	5.6751	1.6977	1.4402
2012년	1.0515	5.5448	5.5448	1.6587	1.4071
2011년	1.0300	5.2733	5.2733	1.5775	1.3382
2010년	1.0180	5.1197	5.1197	1.5316	1.2992
2009년	1.0635	5.0292	5.0292	1.5046	1.2762
2008년	1.0225	4.7290	4.7290	1.4148	1.2
2007년	1.0230	4.6249	4.6249	1.3837	
⋮	⋮	⋮	⋮	⋮	⋮
1983년	1	1	1		

- 1)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최초 부과년도(1997년)를 1로 적용
- 2) 대기총량과징금은 최초 부과년도(2008년)를 1.2로 적용